


| | | | | | | |
|---|---|--|------|---------|------------|----|
|  | <h2 style="margin: 0;">교수업적평가에 관한 규칙</h2> | | 규정번호 | | 3-2-9 | |
| | | | 제정일자 | | 1997.03.01 | |
| | | | 개정일자 | | 2021.03.01 | |
| | | | 개정번호 | Ver. 16 | 총페이지 | 31 |

| | | | | | | | | | | | |
|----|-------|----|-----|----|-------|----|-----|----|-------|----|----|
| 제정 | 1997년 | 3월 | 1일 | 개정 | 2011년 | 5월 | 13일 | 개정 | 2020년 | 3월 | 1일 |
| 개정 | 1999년 | 3월 | 1일 | 개정 | 2012년 | 3월 | 1일 | 개정 | 2020년 | 7월 | 1일 |
| 개정 | 2005년 | 3월 | 1일 | 개정 | 2012년 | 4월 | 30일 | 개정 | 2021년 | 3월 | 1일 |
| 개정 | 2006년 | 3월 | 1일 | 개정 | 2013년 | 6월 | 1일 | | | | |
| 개정 | 2009년 | 3월 | 1일 | 개정 | 2015년 | 3월 | 1일 | | | | |
| 개정 | 2010년 | 3월 | 1일 | 개정 | 2016년 | 3월 | 1일 | | | | |
| 개정 | 2011년 | 3월 | 21일 | 개정 | 2019년 | 3월 | 1일 | | | | |

제1조(목적) 교수업적평가(이하 “업적평가”라 한다)는 교원의 업무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교원의 자기 계발과 학문수준 고양,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교수업적(이하 “업적”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원의 교육활동, 산학협력활동, 연구활동 및 대학발전활동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1.03.01.>

제3조(평가대상) 업적평가는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전체 전임교원(일반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산업체경력교원, 실습교원, 강의교원, 실습전담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03.01.>

제4조(평가기간) 업적평가 대상 기간은 직전 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03.01.>

제5조(평가분야) 업적평가는 다음과 같은 네 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 단, 일반교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그 중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3.01., 2021.03.01.>

- ① “교육분야”는 학사운영, 강의, 학생지도, 교수법 향상 등 교육에 관련된 각종 활동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② “산학협력분야”는 본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한 각종 수탁 연구, 기술 개발 및 학생 취업 등 산학협력을 위한 각종 활동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③ “연구분야”는 논문, 저서, 보고서, 전시, 창작 등 교원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④ “대학발전분야”는 보직 및 위원회 위원 등 교내 활동, 국내외 학회 임원 및 공공기관 자문 등 교외 활동을 통하여 대학, 국가, 지역 및 산업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⑤ 삭제 <개정 2015.03.01.>

제6조(평가기준) ① 제5조 평가분야별 평가 기준은 [별첨1]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1.03.01.>

② 교수업적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강의 및 학생지도 평가) 교육분야의 강의 및 학생지도에 대한 업적평가를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강의 및 학생지도 평가의 방법과 실시는 [별첨2] 강의평가 시행세칙과 [별첨3] 학생지도평가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1.03.01.>

제8조(평가위원회) ① 교수업적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3.01.>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따로 정한다.

제9조(평가 및 자료의 제출) ① 평가 대상 교원은 매학년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부서 입력항목을 제외한 교원 개인별 업적평가 실적 항목을 입력하고 업적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1.>

② 기획처는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1.>

제10조(심의) ① 위원회는 업적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최종 평가표를 작성한다.

② 업적평가보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증빙자료가 미비한 업적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업적평가는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3.01., 2021.03.01.>

제11조(평가의 예외) ① 장기연수, 파견, 휴직, 신규채용 등 평가 기간 중 교수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지 못한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평가의 예외를 적용한다. <개정 2021.03.01.>

1. 1개 학년도 : 해당 학년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5개월 이상 1개 학기 이내 : 해당 학년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 예외 사항이 연속으로 2회 이상인 경우 : 해당 평가 예외 사유 종료 후 업적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2개 학기를 평가하되, 1학기 및 2학기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본인의 원에 의해 평가를 시행할 경우 교수 활동을 수행한 학기만으로 평가를 시행하며, 강의평가 등 2개 학기 평균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1개 학기 점수를 2개 학기 평균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1.03.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처장, 부처장 및 종합정보지원실장의 보직을 수행하는 교원은 그 행정 보직에 재직하는 동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3.01.>

제12조(이의 신청)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수는 중간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정해진 기일 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제13조(자료 보안) 업적평가 결과물은 해당 교수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업적평가 결과물

을 열람 또는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적평가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3.01.>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장기연수자 선정 등을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행 방법과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3.01.>

② 총장은 업적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개정 2021.03.01.>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실시된 교수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 (3) **(경과조치)** 제6조 관련 업적평가 평정기준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6조 관련 업적평가 평정기준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교수업적 평정기준 <개정 2019.03.01., 2019.03.01., 2020.03.01., 2021.03.01>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제 1 장 총 관

1. 평가 분야 : 평가분야는 교육분야, 산학협력분야, 연구분야 및 대학발전분야 평가로 나눈다.
2. 평가 기간 및 배점 : 각 분야의 평가 대상 기간과 배점은 표 1-1에 표시된 바와 같다.

표 1-1. 분야별 업적평가 대상 기간 및 배점

| 평가 분야 | 평가 기간 | 배점 비율 (%) |
|--------|---------------|-----------|
| 교육분야 | 2개학기 평균 또는 누적 | 35 |
| 산학협력분야 | 2개학기 누적 | 30 |
| 연구분야 | 2개학기 누적 | 15 |
| 대학발전분야 | 2개학기 누적 | 20 |

3. 총 점수 : 교수별 업적평가 최종 획득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가. 일반교원, 실습교원 획득점수 = 교육분야 획득점수 + 산학협력분야 획득점수 + 연구분야 획득점수 + 대학발전분야 획득점수 + 가점
 - 나. 산학협력중점교원 획득점수 = 교육분야 획득점수 + 산학협력분야 획득점수 × 1.5 + 연구분야 획득점수 + 대학발전분야 획득점수 + 가점
 - 다. 강의교원, 실습전담교원 획득점수 = 교육분야 획득점수
(단, 교육분야 중 평가항목 1101, 1102, 1103, 1112에 한하여 평가한다.)
4. 분야별 평가단위, 반영비율, 최대점수 : 각 교원은 표 1-2에 표시된 바와 같은 각 분야별 반영비율 및 분야별 최대점수까지만 획득점수로 인정한다.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평가단위에 따라 활용할 수도 있다.

표 1-2. 분야별 평가단위, 반영비율 및 최대점수

| 분야 | 교육 | | 산학협력 | | 연구 | 대학발전 |
|---------|-----|-------|------|-------|----|------|
| | 교육 | 교육협동 | 산학협력 | 산학협동 | | |
| 평가단위 | 개인 | 학부(과) | 개인 | 학부(과) | 개인 | 개인 |
| 반영비율(%) | 30 | 5 | 20 | 10 | 15 | 20 |
| 최대점수 | 150 | 25 | 100 | 50 | 75 | 100 |

5. 개별교수 업적평가의 결과는 총 획득점수에 의한 등위백분율(%) 및 개인평가단위 획득점수에 의한 등위백분율(%)로 표시한다.
6. 평가항목별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표기한다. 단, 평가 항목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점수나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항목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일정 기간 외부 체류나 정기적인 출근이 필요한 각종 연수나 연구 등의 경우는 사전에 대학에 신고된 것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별첨1]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에서 정한 평가 항목 이외에 대학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업적평가 담당 부서 부서장의 신청과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의 가점을 줄 수 있다.
10.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업적을 2가지 이상의 항목에 적용할 수 없다. 단, 2가지 이상의 항목에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교수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11. 각 교수가 작성한 평가보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는 평가위원회는 해당 교수와 협의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만일 고의성 있을 시는 해당 교수에게 이를 통보하고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1인 이상이 참여한 업적에 대한 인정환산율은 해당 평가 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 가. 1인 : 100%
 - 나. 2인 : 70%
 - 다. 3인 : 50%
 - 라. 4인 : 30%
 - 마. 5인 이상 : (100/전체연구자수)% (소수점 이하 절사)

제 2 장 교육 분야

1. 교육 분야의 업적은 교육 세부분야와 교육협동 세부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교육 분야의 범위 및 배점은 표 2-1 ~ 표 2-2와 같다.

표 2-1. 교육 세부분야의 평가항목 및 배점

| 부문 | 항목번호 | 항목내용 | 점수 | 비고 |
|-------------|------|----------------------------|----------|--------------------------------|
| 시간표 | 1101 | 시간표 작성지침 준수 | 5점 | ·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
| 학사일정 준수 | 1102 | 강의계획서 입력 및 성적 입력 기간 준수 | 5점 | ·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
| 강의 과목수 | 1103 | 강의 과목 수 (6과목이상/5과목/4과목) | 10/8/5 | · 1학기와 2학기의 강의 교과목 수 합계로 산출 |
| 반 지도교수 | 1104 | 2반 이상 / 1반 | 10/8 | · 2개 학기 평균으로 산출 · 1개 항목 택일 |
| | 1105 | 비반 지도교수 학생 면담 | 1점/건 | |
| 학생행사 지도 | 1106 | 학생행사 참석 | 2점/건 | · 학과/학교단위 행사만 인정 · 최대 5건 인정 |
| 대회지도 | 1107 | 전국규모대회 입상 이상 수상 | 2점/건 | · 입상 이상 인정 · 최대 5건 인정 |
| | 1108 | 공공단체 주관대회 장관급 이상 수상 | 20점 | · 최대 2건 인정 |
| 교수력향상 프로그램 | 1109 | 교수력 향상프로그램 참여 | 5점/건 | · 최대 3건 인정 |
| 교수법 프로그램 운영 | 1110 | 교과목 인증제 등의 교수법 프로그램 운영 | 20점/건 | · 최대 2건 인정 |
| 원격수업 운영 | 1111 | K-MOOC/대학/개인 | 30/20/10 | · 교과목 당 · 최대 40점 인정 |
| 강의평가 | 1112 | 강의평가 설문조사 | 60점 | · [별첨2] 강의평가 시행세칙에 의거 |
| 학생지도평가 | 1113 | 학생지도평가 설문조사 | 15점 | · [별첨3] 학생지도평가 시행세칙에 의거 |

※ 세부시행지침

- 1) 1101 : ① 최저/최대시수 미준수, ② 주당수업일수 4일 미만, ③ 1일 6시간 초과, ④ 학기당 2개 과목 담당 미만 (5점에서 위반 건당 1점씩 감점한다.)
- 2) 1102 : 강의계획서와 성적을 지정된 기간 내에 미입력한 경우 5점에서 강좌당 1점씩 감점한다.

3) 1103

- 1학기 및 2학기의 강의 교과목 수 합계로 산출한다.
- 강의 교과목 수에서 프로젝트과목(2명 이상 공동 지도인 경우)은 제외하며, 기타 제외 과목은 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4) 1104, 1105 : 2개 학기 평균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5) 1105 : 비 반 지도교수 학생 면담은 지도교수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하며, 학생면담 일지(이름, 학번, 연락처, 면담내용 및 학부(과)장 확인)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6) 1106 : 학생행사 지도는 신입생 OT, 노들축제, 체육대회, 입학식, 졸업식, 졸업생간담회 등 교학처에서 인정된 학생/학교행사에 한하여 학부(과)장이 참석을 확인한 경우에 인정한다.

7) 1107, 1108

○ 대회지도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대회에서 2개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1건으로 인정한다.

○ 1107 : 전국규모 이상의 경진대회, 공모전, 작품전 등에 지도 학생이 참가하여 입상 이상에 해당하는 상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 1108 : 공공 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 경진대회에 지도 학생이 참가하여 장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을 받은 경우 인정하며, 1107 항목과 중복 인정 하지 않는다.

8) 1109

○ 산업체 현장 신기술 습득 등의 교수력 향상 관련 특강 및 연수의 참가를 말한다.

○ 8시간 이상의 특강 및 연수에 참여한 경우에 1건으로 인정하며, 교수학습센터 및 기타 프로그램 운영 주체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 1110

○ 대학에서 진행한 교과목 인증제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운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교수법, 교육과정, 학생 상담, 진로지도 등에 관한 논문게재 실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0) 1111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및 대학 공모를 통하거나, 개인이 자체 개발하고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격수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본인이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해 원격수업을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과목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한 교원의 수에 따라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제1장제12호에 의한 인정환산율을 적용한다.

○ 최대 40점까지 인정한다.

11) 1112

○ 강의평가 점수는 [별첨2] 강의평가 시행세칙에 따라 평가하며 2개 학기 평균으로 산출한다.

○ 1개 학기의 강의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에는 1개 학기 강의평가 점수를 2개 학기 평균으로 간주하며, 2개 학기의 강의평가 점수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12) 1113

○ 학생지도평가 점수는 [별첨3] 학생지도평가 시행세칙에 따라 평가하며 2개 학기 평균으로 산출한다.

○ 1개 학기의 학생지도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에는 1개 학기 학생지도평가 점수를 2개 학기 평균으로 간주하며, 2개 학기의 학생지도평가 점수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강의평가 점수의 25%로 한다.

표 2-2. 교육협동 세부분야의 평가항목 및 배점

| 부문 | 항목번호 | 점수 | 비고 |
|-------------------|------|--------------------------------------|----|
| 겸임교원 및 강사 강의평가 | 1T01 | 학부(과)별 겸임교원 및 강사 강의평가 점수 평균 × 2.5 | |
| 재학생 유지율 | 1T02 | 유지율(%) × 0.1 | |

※ 세부시행지침

- 1) 강의평가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2) 평가기준은 학부를 원칙으로 하며 독립학과는 학과 단위로 한다.
- 3) 재학생 유지율(%) = 재학생수 ÷ 편제정원 × 100

제 3 장 산학협력 분야

1. 산학협력 분야의 업적은 산학협력 세부분야와 산학협동 세부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산학협력 분야의 범위 및 배점은 표 3-1 ~ 표 3-2과 같다.

표 3-1. 산학협력 세부분야의 범위 및 배점

| 부문 | 항목번호 | 항목내용 | 점수 | 비고 |
|--------------|------|---|----------------|--|
| 현장실습 지도 | 2101 | 현장실습과목의 협약 및 수행을 위한 산업체 방문 | 2점×방문 건수 | · 최대 10건 인정 · 결과보고서 제출 · 동일 업체인 경우 학기당 1건 인정 |
| 취업지도 | 2102 | 학생취업을 위한 산업체 방문 | 2점×방문 건수 | · 최대 10건 인정 · 결과보고서 제출 · 동일 업체인 경우 1건 인정 |
| | 2103 | 취업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운영 | 2점×건수 | · 최대 5건 인정 · 결과보고서 제출 |
| 산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 2104 | 산업체 재직자 교육 주최, 운영 또는 강의 | 2점×운영 건수 | · 최대 5건 인정 · 결과보고서 제출 |
| | 2105 | 기술 창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2점×건수 | · 최대 5건 인정 |
| 산업체 연구비 수혜 | 2106 | 본 대학 명의의 각종 수탁에 의한 연구비 수혜 총액 | 50만원당 1점 | · 최대 50점 |
| 기술·경영자문 | 2107 | 본 대학, 정부 또는 산하 공공기관이 의뢰한 산업체에 기술 또는 경영 자문을 실시한 실적 | 2점×1일 (4시간 이상) | · 최대 10일 · 결과보고서 및 일지 제출 |
| 산학협력 협약 | 2108 |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회사를 유치한 실적/산업체 네트워크 유지 실적 | 2점×협약 체결/유지 건수 | · 최대 10건 인정 · 증빙서류 제출 |

※ 세부시행지침

- 1) 2101, 2102 : 해당 부서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2103
 - 전공 자격취득 특강, 전공 실무능력 향상 특강, 취업 특강, 모의 면접, 취업 설명회 등 정규과정 외 특별프로그램 및 행사를 말한다.
 - 대학에서 진행하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 및 인턴 연계 사업도 포함된다.
 - 해당 부서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2104 : 운영 주체가 학부(과)이어야 하고, 해당 부서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4) 2105 : 제출된 증빙서류를 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5) 2106
 - 연구자의 소속이 동양미래대학교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동양미래대학교 또는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간접연구비를 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간접연구비 공제 시점의 연구비 수혜액을 기준으로 50만원당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6) 2107
 - 공공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공시하는 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정부출연기관), 정부 산하단체 등을 의미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정 여부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1일(4시간 이상)당 2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 계획서, 결과보고서, 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7) 2108 : 신규업체 발굴 후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경우만 인정한다.

표 3-2. 산학협동 세부분야의 범위 및 배점

| 부문 | 항목번호 | 항목내용 | 점수 | 비고 |
|----------------|------|---|-------------|--------------|
| 학부(과) 취업률 | 2T01 | 학부(과) 취업률 × 0.5 | | |
| 산학공동협력 교육과정 운영 | 2T02 | 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사회맞춤형교육과정, 계약학과 교육과정, 주문식교육과정 운영 등 | 2점 × 교육과정 수 | · 최대 5개 교육과정 |

※ 세부시행지침

- 1) 2T01 : 취업률은 당해 학년도 기준일에 평가한다.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졸업생이 배출되는 학년도까지 대학 전체의 취업률로 평가한다. 교양과의 경우에는 대학 전체의 취업률로 평가한다.
- 2) 2T02
 - 정규과정 이외 별도의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교수에게 과정당 2점의 개인 점수를 부여한다.
 -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 4 장 연구 분야

1. 연구분야는 논문, 저서등의 일반연구 세부분야와 전시, 창작등의 실기 세부분야로 구성된다.
2. 연구분야의 범위 및 배점은 표 4-1과 같다.

표 4-1. 일반연구 및 실기 세부분야의 범위 및 배점

| 부문 | 항목번호 | 항목내용 | 점수 | 비고 |
|----------------|------|---|---------------|--------------------------------------|
| 논문 | 3101 | SCI급/국제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기타 학술지 | 100/70 /40 | |
| 저서 | 3102 | 전공과 관련된 신규 주교재/부교재 | 50/30 | · 강의 활용 교재만 인정 |
| 대학 정책연구 보고서 | 3103 | 대학 정책 연구보고서 | 20 | · 참여 건당 |
| 지적 재산권 | 3104 | 출원인이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고 본인이 발명자로 등록한 국제/국내 특허권, 디자인권 | 70/40 | · 최대 1건 인정 · 발명자 수를 기준으로 인정환산율 적용 |
| 자격 취득 | 3105 | 기술사 등 자격 취득 | 50 | |
| 건축 · 디자인 | 3106 | 전시 · 공모전 | 70/50 /20 | · 최대 3회 인정 · 회당 점수 |
| | 3107 | 전시 · 공모전 | 50/30 /10 | · 최대 3회 인정 · 회당 점수 |

※ 세부시행지침

1) 3101

- SCI급 학술지란 SCI, SSCI, A&HC, SCI-E, SCOPUS,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 국제 학술지란 SCI급 학술지에 포함되지 않는 국외 학술지를 말한다. (단, 창간호는 인정하지 않음)
- 기타 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포함되지 않는 국내 학술지를 말한다. (단, 창간호는 인정하지 않음)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후보지를 제외한 국내학술지는 연간 4회 이상 발행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교수가 미제출 시 불인정한다.
-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이란 우리 대학 산업기술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을 말하며, 연간 최대 40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 2) 3102
 - 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서의 겉표지, 초판 발행일, ISBN 번호 및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저서는 발행 후 2년 이내에 1학기 이상 강의가 이루어진 연도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워크시트, 핸드북, 가이드북 형태의 강의교재는 저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저서는 그 구성과 내용에 따라 제출 자료가 평가기준에 미흡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다.
- 3) 3103 : 대학 정책연구보고서는 우리 대학 산업기술연구소를 통한 공모과제에 한하여 인정한다. 연구 참여 건당 20점을 부여하며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제1장제12호에 의한 인정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4) 3104 : 특허 및 디자인권은 출원일 및 등록일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등록공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동양미래대학교 또는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본인이 발명자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한다.
- 5) 3105 : 전공 관련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체육지도자 등급 이상의 자격취득에 한한다.
- 6)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3101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저자가 2명 이상인 논문에서 제1저자
 - 3103 : 연구자가 2명 이상인 연구보고서의 연구책임자
- 7) 건축·디자인
 - 건축·디자인 부문의 모든 실적에 대해서는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회 및 수상 규모와 수준, 각 항목별 작품의 중복 또는 유사 여부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3106, 3107
 - 개인전은 단독, 그룹전은 20인 이하, 단체전은 20인 초과를 의미한다.
 - 모든 전시는 인쇄된 작품집 원본과 함께, 해당 작품이 전시된 전시장 사진(3x5) 5매 이상을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 국내외 현상설계 및 공모전의 수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본상
 - 입상 (특선 이상)
 - 입선 (본선진출(finalist))
 - 3106 : 국내외 공인단체 및 공공기관 공모전은 다음과 같은 규모와 수준의 미술, 건축, 디자인 관련 대회를 지칭한다.
 - 국제전, 미술/건축대전, 산업디자인대전, 실내건축대전 등

제 5 장 대학발전 분야

1. 대학발전활동은 교내활동과 교외활동을 통합하여 평가한다.
2. 대학발전분야의 범위 및 배점은 표 5-1과 같다.

표 5-1. 대학발전의 평가항목과 점수

| 부문 | 항목번호 | 항목내용 | 점수 | 비고 |
|--------------|------|---|--------|------------|
| 보직 | 4001 | 학부장, 부속시설의 장, 기획처 전문위원 | 50 | · 최대 1종 인정 |
| | 4002 | 학과장 | 40 | |
| | 4003 | 동양미디어 주간교수 | 20 | |
| 대학 TFT 위원 | 4004 | 대학 TFT 위원 (중요/일반) | 20/10 | · 최대 3종 인정 |
| 위원회 | 4005 | 각종 교내 위원회 위원 A/B/C 등급 | 10/8/6 | · 최대 3종 인정 |
| 전담교수 | 4006 | 취업전담교수 / 교육혁신실무위원 / 사회맞춤형학과 전담교수 등 | 10 | |
| 동아리 지도 | 4007 | 교내 등록 동아리 지도교수 | 10 | · 최대 1종 인정 |
| 대학행사 참여 | 4008 | 신입생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고등학교, 산업체 등) 방문 | 2 | · 최대 5건 인정 |
| | 4009 | 해외 연수, 업체 견학, 전시·박람회 등의 단체 인솔지도 | 2 | · 최대 3건 인정 |
| | 4010 | 대학 또는 행정부서 주관의 행사 참석 | 2 | · 최대 5건 인정 |
| 대학홍보 | 4011 | 국내외 학회 임원/위원 | 5/3 | · 최대 1종 인정 |
| | 4012 | 공공기관의뢰 평가, 출제, 심의위원 | 2 | · 최대 5건 인정 |
| | 4013 | 공공기관의뢰 교육, 강연, 중앙일간지 기고, 방송 출연(전문가, 패널 등) | 3 | · 최대 3건 인정 |
| 순수 봉사활동 | 4014 | 지역 또는 국제 사회를 위한 순수 봉사활동 | 3 | · 최대 1건 인정 |

※ 세부시행지침

- 1) 4001, 4002, 4003 : 업적평가 대상 기간 중 1개월 이상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한다. 부속시설의 장은 직제규칙 또는 산학협력단 직제규칙에 포함된 경우에 인정한다.
- 2) 4004
 - 대학 TFT 위원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TFT에 한하며 대외평가 결과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중요/일반 등급을 정하여 산정하며,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제1장제12호에 의한 인정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2개 학년도 이상 운영한 TFT는 활동 종료일에 해당하는 학년도의 실적만 인정한다.

3) 4005

- 교내 위원회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 회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적평가위원회에서 A/B/C 등급을 정하여 산정하며,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제1장제12호에 의한 인정환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참여 건당 점수를 인정한다.
-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한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4) 4006 : 전담교수란 대학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취업전담교수 / 교육혁신실무위원 / 사회맞춤형학과 전담교수 등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위원을 의미한다.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제1장제12호에 의한 인정환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참여 건당 점수를 인정한다.

5) 4007 : 작품개발 동아리 지도교수는 2인까지는 인정환산율 100%를 적용하며, 3인부터는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제1장제12호의 인정환산율을 적용한다. 학술 및 취미동아리 지도교수는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제1장제12호의 인정환산율을 적용한다.

6) 4008 : 해당 부서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 4009

- 해외 연수, 업체 견학, 현장 답사, 전시·박람회 등에서 학생 또는 직원 단체의 인솔 및 지도 실적으로 해당 부서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한다.
- 수업 대체가 아닌 순수 외부 활동만을 인정한다.

8) 4010 : 취업 캠프, 연수, 워크숍, 특강, 공청회, 교수회의 및 과제 설명회 등의 대학 및 행정부서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 참가 실적으로 최대 5건까지 인정한다.

9) 4011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수준 이상의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에 1년 이상 재임한 경우에 한하여 현임기 종료 시점에 1회 인정한다.

10) 4012, 4013 : 공공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공시하는 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정부출연기관), 정부 산하단체 등을 의미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정 여부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다.

11) 4012 : 평가위원에 위촉되어, 평가, 출제, 심사 등의 활동을 수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하며, 평가위원 위촉장만 제출한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12) 4011, 4012, 4013 : 대학홍보 부문은 최대 15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13) 4014 : 공공기관, 공공 단체 또는 대학 주관의 순수 봉사활동에 한하며, 5일 이상의 봉사 실적만 인정한다.

제 6 장 가점

1. 평가기간 중에 발생한 대학 내외의 각종 상훈(감사장, 감사패, 격려장 등은 제외)과 대학발전 기여 활동 등에 대해서는 표 6-1에 규정된 일정 점수를 가한다.
2. 가산 요인이 있을 시 해당 교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점의 인정 여부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표 6-1. 개별교수 가산점 항목별 점수

| 부분 | 항목번호 | 항목내용 | 점수 | 비고 |
|---------|------|--------------------|-----------|-------------|
| 훈장·표창 | 5001 | 훈장, 정부표창 | 100 | |
| | 5002 | 교내표창 | 50 | |
| 대학발전 기여 | 5003 | 장학금, 발전기금, 기부금, 모금 | 100만원당 1점 | · 최대 50점 이내 |
| | 5004 | 총장 가점 | 50 | · 최대 50점 이내 |

※ 세부시행지침

- 1) 2명 이상의 공동 수상인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제1장제12호에 의한 인정환산율을 적용한다.
- 2) 5001P, 5002P : 대외활동의 공로로 정부 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급 이상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와,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장 이상의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에 인정하며, 장기근속표창은 인정하지 않는다.
- 3) 5004 : [별첨1]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에서 정한 평가항목 이외에 대학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 총장은 업적평가 담당 부서 부서장의 신청과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50점 이내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

[별첨2] <개정 2016.03.01., 2020.03.01., 2020.07.01., 2021.03.01.>

강의평가 시행세칙

제1조(목적)

- ① 강의계획서, 강의의 질,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습량 및 강의 만족, 교재 및 강의의 적절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담당 교수의 수업방안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 ② 강의평가 결과를 담당 교수에게 공개하여 교과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강의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도록 한다.

제2조(횟수 및 기간)

강의평가는 학기당 2회 실시한다.

- ① 1차 평가 : 학기의 5주차에 시행한다. 1차 강의평가는 업적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교수의 강의 개선에 활용한다.
- ② 2차 평가 : 매 학기 수업종료일부터 성적확정일 전까지 시행한다.

제3조(대상강좌)

- ① 대학의 모든 강좌(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포함)에 대하여 평가한다. 단, 강좌의 특성이 강의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예 : 현장실습)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강의평가를 실시한 강좌 중 강의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형평성 등의 사유가 있는 강좌는 강의평가 및 교수업적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 대한 사항은 학부(과)의 신청을 받아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4조(방법)

- ① 강의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 1. 일반 대면수업으로 진행한 경우 “표 2-3, 표 2-4 일반수업용 강의평가 설문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2. 중간 및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표 2-5, 표 2-6 원격수업용 강의평가 설문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3. 총장이 강의평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70% 미만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한 경우에도 “표 2-5, 표 2-6 원격수업용 강의평가 설문지”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2차 강의평가는 수강생의 강의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강의평가를 실시 한 과목에 대해서만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2차 강의평가는 설문 내용과 함께 강의계획서의 기본정보를 포함하여, 교재의 이미지, 강의 완료 후 수행가능내용 등을 수강생들이 효과적으로 인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평가의 신뢰도를 위해서 각 설문 영역별 내용을 별도화면으로 구성하여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평가하도록 한다.

*** 강의평가를 위한 강의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전체 강의평가의 변별력과 신뢰도를 위해서 강의 기본정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1) 강의교재가 있을 경우 이미지를 삽입하여야 한다.
- 2) 수강생의 입장에서 “강의완료 후 수행가능내용” 란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단, 책임교수가 있는 강좌의 경우, 책임교수가 이 내용을 작성하도록 한다.)
 - 설문영역의 강의만족도 항목인 - ⑩이 강의를 수강하여 “강의 완료 후 수행가능 내용 “을 만족하였다.(주의! 현재 평가화면의 좌측하단부분 확인) - 에 대한 내용으로 평가가 원활하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④ 1차 및 2차 강의평가 결과는 평가 종료 후 평가 대상 교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점수 산출 방법)

- ① 강의평가 점수는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강좌별 점수의 평균값으로 과목별 점수를 산출하며, 전체 강좌별 점수의 평균값으로 교수별 점수를 산출한다.
- ② 강의평가 점수는 계산 단계별 산출 값의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③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 1.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는 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생의 강의평가 설문조사 결과 취득한 학생별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1차 및 2차 학생별 강의평가 점수 산출 방법은 표 2-1과 같다.

표 2-1. 1차 및 2차 학생별 강의평가 점수 산출 방법

| 구분 | 강의평가 설문 문항별 점수 | | 학생별 강의평가 점수 산출 방법 | 비고 |
|---------|----------------|------|-------------------|-----------------|
| | 문항 | 점수 | | |
| 1차 강의평가 | ①~③ | 각 5점 | ①~③의 합계점수 ÷ 3 | 표 2-3, 표 2-5 참고 |
| 2차 강의평가 | ①~⑩ | 각 5점 | ①~⑩의 합계점수 ÷ 10 | 표 2-4, 표 2-6 참고 |

※ 강의평가 설문 중 학생 평가 문항과 주관식 문항은 강의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 2.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는 F학점 이수 학생의 평가를 제외하며, 나머지 학생 중 상위 및 하위 5%에 해당하는 인원도 추가 제외한 후 계산한다. 5% 인원 계산 방법은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에서 버림으로 처리한다.

- 3. 상기 2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강의평가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인 강좌에 대해서만 강의평가 점수 산출에 반영하며, 10명 미만인 강좌의 경우 강의평가 점수 산출에서 제외한다.
- ④ 교수별 강의평가 점수는 제3항의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를 산출한 후 해당 학기 전체 강좌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단,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강좌는 제외한다. 교수별 1차 및 2차 강의평가 점수 산출 방법은 표 2-2와 같다.

표 2-2. 1차 및 2차 강의평가 점수 산출 방법

| 부문 | 구분 | 업적평가 항목번호 | 점수 산출 방법 | 비고 |
|-------|----------|-----------|------------------------------------|--------------|
| 강의 평가 | 1차 강의 평가 | 해당 없음 | 강의평가 점수 = 전체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값 | · 업적평가 등 미반영 |
| | 2차 강의 평가 | 1112 | 강의평가 점수 = 전체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값 × 12 | |

제6조(결과 열람 및 피드백)

강의평가 결과와 수강생 의견은 교원별로 대학의 학사행정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대학 전체평균, 학과 평균, 과목 평균 및 개인의 강의평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강의평가 분류별 정규분포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피드백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결과 활용)

- ① 강의평가 결과는 교원의 업적평가 및 승진, 재임용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강의평가 설문지(1차)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강의를 되도록 교수님을 도와 드리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2-3. 일반수업용 강의평가 설문지(1차)

| 구분 | 설문 내용 | 점수 | |
|----------|---|---|-----|
| 학생 평가 | 1. 이 수업에 본인은 몇 번이나 결석하였는가? (없다, 1회, 2회, 3회, 3회 초과) | | |
| | 2.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질의 및 응답, 과제제출, 연습 및 복습, 팀 활동 참여 등) | | |
| | 3.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주관식 | |
| 강의 평가 | 강의진행 및 방법 | ① 수업은 학생들의 이해정도를 파악해 가면서 진행되었다. | 1~5 |
| | | ② 교수의 교수방법(언어표현의 정확도, 설명의 명확성, 사례제시의 적절성)에 만족하고 있다. | 1~5 |
| | | ③ 질의 응답을 비롯하여, 학생과 교수간의 상호작용에 만족하고 있다. | 1~5 |
| | 강의내용 | ④ 이 강의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주관식 |
| | | ⑤ 이 강의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주관식 |

강의평가 설문지(2차)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강의를 되도록 교수님을 도와 드리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2-4. 일반수업용 강의평가 설문지(2차)

| 구분 | 설문 내용 | 점수 | |
|----------|--|---|-----|
| 학생 평가 | 1. 이 수업에 본인은 몇 번이나 결석하였는가? (없다, 1주분 이하, 2주분 이하, 3주분 이하, 3주분 초과) | | |
| | 2.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질의 및 응답, 과제제출, 예습 및 복습, 팀 활동 참여 등) | | |
| 강의 평가 | 강의교재 및 계획서 | ① 교재나 수업자료의 내용 및 수준이 적절하였으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 1~5 |
| | | ② 강의계획서가 과목의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 1~5 |
| | 강의준비 | ③ 교수는 강의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 1~5 |
| | | ④ 강의 준비는 매번 충실히 하였다. | 1~5 |
| | 강의진행 및 방법 | ⑤ 보강을 하지 않은 휴강이 없었으며 강의시간이 잘 지켜졌다. | 1~5 |
| | | ⑥ 교수의 교수방법(언어표현의 정확성, 설명의 명확성, 사례제시의 적절성, 질의응답, 참여유도)에 만족하였다. | 1~5 |
| | | ⑦ 과제의 내용이 좋았고, 그 결과를 적절한 시기에 알려 주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 1~5 |
| | | ⑧ 성적 평가 방식이 적절하고 공정하였다. | 1~5 |
| | 강의 만족도 | ⑨ 교수의 강의내용에 만족하였다. | 1~5 |
| | | ⑩ 이 강의를 수강하여 “강의 완료 후 수행가능 내용”을 만족하였다. (주의! 현재 평가화면의 좌측 하단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평가하세요.) | 1~5 |

강의평가 설문지(1차)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강의를 되도록 교수님을 도와 드리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2-5. 원격수업용 강의평가 설문지(1차)

| 구분 | 설문 내용 | 점수 | |
|----------|---|---|-----|
| 학생 평가 | 1. 이 수업에 본인은 몇 번이나 수강하지 못하였는가? (없다, 1주분 이하, 2주분 이하, 3주분 이하, 3주분 초과) | | |
| | 2.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질의 및 응답, 과제제출, 예습 및 복습 등) | | |
| | 3.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주관식 | |
| 강의 평가 | 강의진행 및 방법 | ① 수업은 학생들의 이해정도를 파악해 가면서 진행되었다. | 1~5 |
| | | ② 교수의 교수방법(언어표현의 정확도, 설명의 명확성, 사례제시의 적절성)에 만족하고 있다. | 1~5 |
| | | ③ 질의 응답을 비롯하여, 학생과 교수 간의 상호작용에 만족하고 있다. | 1~5 |
| | 강의내용 | ④ 이 강의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주관식 |
| | | ⑤ 이 강의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주관식 |

강의평가 설문지(2차)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강의를 되도록 교수님을 도와 드리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2-6. 원격수업용 강의평가 설문지(2차)

| 구분 | 설문 내용 | 점수 | |
|----------|---|---|-----|
| 학생 평가 | 1. 이 수업에 본인은 몇 번이나 수강하지 못하였는가? (없다, 1주분 이하, 2주분 이하, 3주분 이하, 3주분 초과) | | |
| | 2.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질의 및 응답, 과제제출, 예습 및 복습 등) | | |
| 강의 평가 | 강의교재 및 계획서 | ① 교재나 수업자료의 내용 및 수준이 적절하였으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 1~5 |
| | | ② 강의계획서가 과목의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 1~5 |
| | 강의준비 | ③ 교수는 강의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 1~5 |
| | | ④ 강의 준비는 매번 충실히 하였다. | 1~5 |
| | 강의진행 및 방법 | ⑤ 담당교수는 강의 계획에 의해 주차별 수업을 진행하였다. | 1~5 |
| | | ⑥ 교수의 교수방법(언어표현의 정확성, 설명의 명확성, 사례제시의 적절성)에 만족하였고, 질의 응답이 가능하였다. | 1~5 |
| | | ⑦ 과제의 내용이 좋았고,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 1~5 |
| | | ⑧ 성적 평가 방식이 적절하고 공정하였다. | 1~5 |
| | 강의 만족도 | ⑨ 교수의 강의내용에 만족하였다. | 1~5 |
| | | ⑩ 이 강의를 수강하여 “강의 완료 후 수행가능 내용”을 만족하였다. (주의! 현재 평가화면의 좌측 하단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평가하세요.) | 1~5 |
| 기타 | 기타 담당 교수님에게 바라는 점 또는 강좌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자 이내 기재) | 주관식 | |

제8조(화면구성)

수강생용 강의평가의 화면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면의 종류

1차 평가 세부평가화면과 1차 평가 전체항목화면, 2차 평가 세부평가화면과 2차 평가 전체항목 화면으로 전부 4개의 화면으로 구성

② 평가진행에 있어서의 화면구성의 특징

설문항목별 내용들을 최소2항목에서 최대 4항목만 화면에 표현하였으며, 또 설문내용의 집중과 인지의 효과를 위해 응답이후, 최소한의 일정시간차를 두어 다음 설문내용이 화면에 표현되도록 구성

③ 세부평가 화면구성의 특징

세부평가 화면은 과목명, 담당교수의 사진, 교재명(이미지제공), 강의완료 후 수행가능내용, 강의계획서 기본정보내용으로 구성

세부평가의 화면은 수강생들이 해당 설문에 대한 평가진행 시 필요한 내용들을 동일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평가시 화면활용 예)

- 강의방법이나, 평가방식에 대한 설문평가의 경우 화면상단의 “강의 계획서 기본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
- 또 교재의 수준과 활용에 대한 설문평가 역시 좌측중간의 “교재” 관련 화면에서 확인하여 평가
- 강의만족도에 해당하는 설문평가는 좌측하단의 “강의완료 후 수행가능 내용”란에서 확인하여 평가

그림 2-1 수강생용 - 1차 평가 세부평가화면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evaluation interface for a course titled '가구디자인' (Furniture Design). The interface is organized into several sections:

- Header:** '성적관리 | 강의평가' (Grade Management | Lecture Evaluation) with navigation buttons for '저장' (Save) and '닫기' (Close).
- Course Information:** '과목명' (Course Name) is '가구 디자인' (Furniture Design). '담당교수' (Instructor) is '홍길동' (Hong Gil-dong).
- 교재 (Textbooks):** Displays images of textbooks including '가구디자인' (Furniture Design), '디자인의 요소' (Elements of Design), '기초조형 Thinking' (Basic Form Thinking), and 'IC'.
- 강의계획서 기본정보 (Syllabus Basic Information):** A table with columns for '담당교수' (Instructor), '강의실/시간' (Classroom/Time), '이메일' (Email), and '전화번호' (Phone Number). It lists '교과목개요' (Course Overview), '교과목목표' (Course Objectives), '수업시 사용도구' (Tools Used in Class), '평가방법' (Evaluation Method), and '수강안내' (Course Guidance).
- 강의 완료 후 수행가능 내용 (Content Available After Lecture Completion):** A list of three evaluation items related to design concepts like form, composition, and design process.
- 강의평가 설문내용 (Lecture Evaluation Questionnaire Content):** A section with two questions:
 - 이 수업에 본인은 몇번이나 결석하였는가? (How many times did you skip this class?) with options: 없다, 1회, 2회, 3회, 3회 초과
 -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질의/응답, 과제제출, 예습 및 복습, 팀활동 등) (Did you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class? (Questions/Answers, Assignment Submission, Pre-study and Review, Team Activities, etc.)) with options: 전혀아니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그림 2-2 수강생용 - 1차 평가 전체항목화면

성적관리 | 강의평가

2010년도 2학기 과목명 가구디자인 1996207 MC 저장 닫기

과목명: 가구 디자인 담당교수: 홍길동

1차 강의평가 설문내용 * 주의!!! 한 문항씩 순서대로 모든 문항에 답변하여야 저장되며, 작업저장 이후에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 설문영역 | 번호 | 내용 |
|-----------|----|--|
| 학생평가 | 1 | 이 수업에 본인은 몇 번이나 결석하였는가? <input type="radio"/> 없다 <input type="radio"/> 1회 <input type="radio"/> 2회 <input type="radio"/> 3회 <input type="radio"/> 3회 초과 |
| | 2 |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질의 및 응답, 과제제출, 예습 및 복습, 팀 활동 참여 등) <input type="radio"/> 전혀아니다. <input type="radio"/> 그렇다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input type="radio"/> 그렇지않다 <input type="radio"/> 매우그렇다 |
| | 3 |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주관식) |
| 강의진행 및 방법 | 1 | 수업은 학생들의 이해정도를 파악해 가면서 진행되었다. <input type="radio"/> 전혀아니다. <input type="radio"/> 그렇다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input type="radio"/> 그렇지않다 <input type="radio"/> 매우그렇다 |
| | 2 | 교수의 교수방법(언어표현의 정확도, 설명의 명확성, 사례제시의 적절성)에 만족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전혀아니다. <input type="radio"/> 그렇다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input type="radio"/> 그렇지않다 <input type="radio"/> 매우그렇다 |
| | 3 | 학생과 교수간의 상호작용에 만족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전혀아니다. <input type="radio"/> 그렇다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input type="radio"/> 그렇지않다 <input type="radio"/> 매우그렇다 |
| 강의내용 | 4 | 이 강의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주관식) |
| | 5 | 이 강의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주관식) |

강의 원료 후 수행가능 내용

- 형태 및 구조원리, 재료 그리고 인체의 비례가 의자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식 배양
- 저명한 여러 작가 조사를 통해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감각을 디자인에 적용 가능
- 최종 디자인 결과물인 스툴(STOOL)을 제작해 볼으로써 최대한 기법고, 심미성이 뛰어나며, 가장 구조적인 디자인에 대한 창조적 능력 함양

<< 처음으로

그림 2-3 수강생용 - 2차 평가의 세부평가화면

성적관리 | 강의평가

2010년도 2학기 과목명 가구디자인 1996207 MC 저장 닫기

과목명: 가구 디자인 담당교수: 홍길동

강의계획서 기본정보

| | | | | | |
|----------|--|--------|-------------------------|------|-------------------------------------|
| 강의실/시간 | 목:2(3-503), 3(3-503), 4(3-503) | 이메일 | robotomy@dongyang.ac.kr | 전화번호 | 1918 |
| 연구실 | - | 면담가능시간 | 목요일 오후2시 | 도서사용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교과목개요 | - 이 강의는 형태 및 구조원리, 재료 그리고 인체의 비례가 의자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다. - 디자인의 심미적인 부분은 저명한 여러 작가조사를 통해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감각을 디자인에 적용해 본다. - 최종 디자인 결과물은 최대한 기법고, 심미성이 뛰어나며, 가장 구조적이며 안정감을 원리로 한다. | | | | |
| 교과목목표 | - 과제가 요구하는 문제점과 과제의 목적에 대해 이해한다. - 디자인상 진행단계와 우선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를 순차적으로 풀어간다. -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인체공학/기공/구조/재료 등)능력을 훈련한다. | | | | |
| 수업시 사용도구 | - 스케치 및 렌더링 도구 및 소프트웨어에 활용된 재료 (폼보드 / 우드락 / 골판지 등),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 | | | | |
| 평가방법 | - 출석 20 / 중간과제 30 / 기말과제 40 / 수업참여도 10 | | | | |
| 수강안내 | - 자료분석과 실기가 병행되는 창조적 훈련중심의 과제를 완성해야하는 수업이므로 사전 수업준비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 | | | | |

강의평가 설문내용 * 주의!!! 한 문항씩 순서대로 모든 문항에 답변하여야 저장되며, 작업저장 이후에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 설문영역 | 번호 | 내용 |
|--------------|----|--|
| 강의교재 및 계획서내용 | 1 | 교재의 내용 및 수준이 적절하였으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radio"/> 전혀아니다. <input type="radio"/> 그렇지않다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input type="radio"/> 그렇다 <input type="radio"/> 매우그렇다 |
| | 2 | 강의계획서가 과목의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radio"/> 전혀아니다. <input type="radio"/> 그렇지않다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input type="radio"/> 그렇다 <input type="radio"/> 매우그렇다 |

<< 이전으로 >> 다음으로 >> 전체보기

그림 2-4 수강생용 - 2차 평가 전체항목화면



2. 교수용 강의평가 결과조회용 화면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면의 종류

강좌담당교수가 진행한 강좌전체결과에 대한 조회화면, 그리고 강좌별로 설문의 세부항목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현된 강좌별 결과분석(피드백)화면, 전체 2가지로 구성

② 강좌별 결과분석(피드백)화면세부평가의 화면 구성의 특징

강좌별 결과분석 및 세부평가의 화면은 강좌의 설문평가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한 결과가 표현되며, 이와 함께 강의평가 분류별 분포도가 표현된다.

특히, 강의평가 분류별 분포도는 설문평가를 영역별로 분석하여 표현한 것으로 교수자신이 분석결과로서의 “나의점수, 백분율, 전체평균, 표준편차” 등을 통해 현재의 위치를 확인, 피드백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

그림 2-5 교수용 - 평가결과 전체강좌화면

e 서비스 > 수업과 성적 > 강의평가결과조회 도움말

년도 2010 학기 2학기 교번 2003036 교직원명 홍길동 조회 조건변경

학과/전체평균

| 구분 | 평균 | 학생평가 | 강의교재 및 계획서 | 강의준비 | 강의진행 및 방법 | 강의만족도 |
|--------------------|------|------|------------|------|-----------|-------|
| 본인 [2003036] 홍길동 | 4.63 | 4.33 | 4.55 | 4.66 | 4.58 | 4.78 |
| 전체 | 4.53 | 4.35 | 4.26 | 4.45 | 4.44 | 4.56 |

과목별 평가점수

| NO | 과목번호 | 과목명 | 과목평균 | 학생평가 | 강의교재 및 계획서 | 강의준비 | 강의진행 및 방법 | 강의만족도 |
|----|---------|---------------|------|------|------------|------|-----------|-------|
| 1 | 2000104 | 포트폴리오 | 4.63 | 4.33 | 4.55 | 4.66 | 4.58 | 4.78 |
| 2 | 2003032 | 실내설계스튜디오(III) | 4.63 | 4.33 | 4.55 | 4.66 | 4.58 | 4.78 |

강좌별 평가점수

| NO | 과목번호 | 강좌 | 과목명 | 평균 | 세부내역 | 학생평가 | 강의교재 및 계획서 | 강의준비 | 강의진행 및 방법 | 강의만족도 |
|----|---------|----|-------|------|------|------|------------|------|-----------|-------|
| 1 | 2000104 | W1 | 포트폴리오 | 4.56 | 확인 | 4.63 | 4.33 | 4.55 | 4.66 | 4.58 |
| 2 | 2000104 | W1 | 가구디자인 | 4.56 | 확인 | 4.63 | 4.33 | 4.55 | 4.66 | 4.58 |
| 3 | 2000104 | W2 | 공공디자인 | 4.56 | 확인 | 4.63 | 4.33 | 4.55 | 4.66 | 4.58 |

찾기 정렬 엑셀 인쇄

그림 2-6 교수용 - 강좌별 평가결과 분석화면

성적관리 | 강의평가 닫기

년도 2010 학기 2학기 과목명 포트폴리오 수강인원 27 참여인원 26 참여율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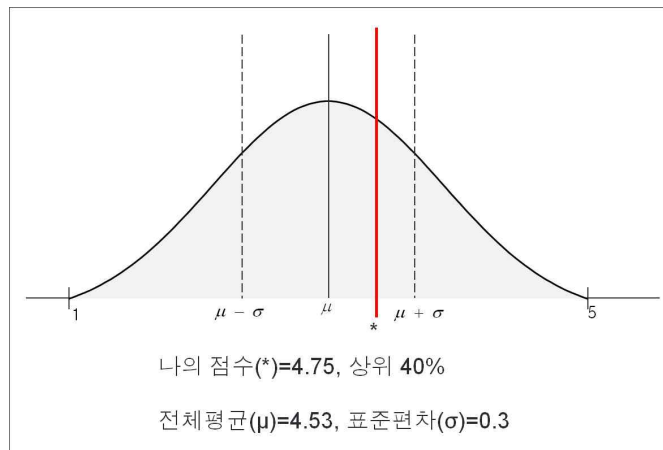
| 설문영역 | 번호 | 내용 | 보기1 | 보기2 | 보기3 | 보기4 | 보기5 |
|------------|----|---------------------------------------|-----|-----|-----|-----|-----|
| 학생평가 | 1 | 이 수업에 본인은 몇 번이나 결석하였는가? | 17 | 5 | 3 | 1 | 0 |
| | 2 |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16 | 6 | 3 | 0 | 1 |
| 강의교재 및 계획서 | 1 | 교재의 내용 및 수준이 적절하였으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 17 | 7 | 2 | 0 | 0 |
| | 2 | 강의계획서가 과목의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 16 | 5 | 4 | 1 | 0 |
| 수업전반 건의사항 | 1 | 교수님 포트폴리오 평가가 힘들었어요..... | 62% | 19% | 15% | 4% | 0% |
| | 2 | | | | | | |

강의평가 분류별 정규분포

| 분류 | 그래프 | 나의 점수(*)=4.45, 상위 40% | 전체평균(μ)=4.33, 표준편차(σ)=0.51 |
|------------|-----|-----------------------|----------------------------|
| 강의교재 및 계획서 | | | |
| 강의 준비 | | | |
| 강의 진행 및 방법 | | | |
| 강의 만족도 | | | |

엑셀 인쇄

그림 2-7. 교수용 - 정규분포 분석내용



[별첨3] <신설 2021.03.01.>

학생지도평가 시행세칙

제1조(목적)

- ① 대학생활지도, 진로지도, 취업지도 등 학생지도를 평가함으로써 학생만족도 향상을 추구한다.
- ② 학생지도평가 결과를 지도교수에게 공개하여 학생지도 활동의 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제2조(횟수 및 기간)

- ① 학생지도평가는 매 학기 수업종료일부터 성적확정일 전까지 실시한다.

제3조(대상)

- ① 모든 학생에 대해 반별로 학생지도를 평가한다.
- ② 제1항에 의해 학생지도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 형평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교수업적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 대한 사항은 학부(과)의 신청을 받아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4조(방법)

- ① 학생지도평가는 “표 3-3 상담평가 설문지”에 의거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 ② 학생지도평가는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설문내용과 함께 학생들이 대학생활의 구체적 안내, 진로 및 취업의 안내 등에 대해 지도교수의 상담을 충분히 받았는가를 평가한다.
- ③ 학생지도평가 결과는 평가 종료 후 평가 대상 교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점수산출)

- ① 학생지도평가는 지도반별 학생지도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전체 지도반별 점수의 평균값으로 교수별 점수를 산출한다.
- ② 학생지도평가 점수는 계산 단계별 산출 값의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③ 학생지도평가 점수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 1. 지도반별 학생지도평가 점수는 학생지도 평가에 참여한 학생의 학생지도평가 설문조사 결과 취득한 학생별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학생별 학생지도평가 점수 산출 방법은 표 3-1과 같다.

표 3-1. 학생별 학생지도평가 점수 산출 방법

| 구분 | 학생지도평가 설문 문항별 점수 | | 학생별 학생지도평가 점수 산출 방법 | 비고 |
|---------|------------------|------|---------------------|----------|
| | 문항 | 점수 | | |
| 학생지도 평가 | ①~⑩ | 각 5점 | ①~⑩의 합계점수 ÷ 10 | 표 3-3 참고 |

2. 지도반별 학생지도평가 점수는 상위 및 하위 5%에 해당하는 인원을 제외한 후 계산한다. 5% 인원 계산 방법은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에서 버림으로 처리한다.
3. 상기 2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학생지도 평가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인 지도반에 대해서만 학생지도평가 점수 산출에 반영하며, 10명 미만인 지도반의 경우 학생지도평가 점수 산출에서 제외한다.
4. 교양과 등 지도반을 담당하지 않은 교원은 [별첨 2] 강의평가 점수의 25%로 산출한다.

④ 교수별 학생지도평가 점수는 제3항의 지도반별 학생지도평가 점수를 산출한 후 해당 학기 전체 지도반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단,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도반의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 교수별 학생지도평가 점수 산출 방법은 표 3-2와 같다.

표 3-2. 학생지도평가 점수 산출 방법

| 부문 | 업적평가 항목번호 | 점수 산출방법 | 비고 |
|---------|-----------|-------------------------------------|-------------------------------|
| 학생지도 평가 | 1113 | 학생지도평가 점수 = 전체 지도반 학생평가 점수의 평균값 × 3 | · 지도반 미담당 교원 = 강의평가 점수 × 0.25 |

제6조(결과 열람 및 피드백)

학생지도평가 결과와 지도반 학생 의견은 교원별로 대학의 학사행정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대학 전체평균, 학과평균, 과목평균 및 개인의 학생지도평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학생지도평가 분류별 정규분포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결과 활용)

- ① 학생지도평가 결과는 교원의 업적평가 및 승진, 재임용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학생지도평가 설문지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좋은 상담이 되도록 지도교수님을 도와 드리기를 위한 것이므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3-3. 학생지도평가 설문지

| 구분 | 설문 내용 | | 점수 |
|----------|---|--|-----|
| 학생 평가 | 대학생활지도, 진로지도, 취업지도 중 상담을 받고 싶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 | 주관식 |
| 상담 평가 | 상담내용 | ① 나는 이번학기 지도교수님과 충분한 상담(면담)을 받을 수 있었다. | 1~5 |
| | | ② 지도교수님은 나에게 상담(면담)을 통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 1~5 |
| | | ③ 지도교수님은 상담(면담)을 통해 나에게 대하여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 1~5 |
| | | ④ 지도교수님은 상담(면담)을 통해 나의 진로 계획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 1~5 |
| | | ⑤ 지도교수님은 지도교수 상담(면담)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었다. | 1~5 |
| | | ⑥ 지도교수님은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나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려 노력하였다. | 1~5 |
| | 상담태도 | ⑦ 지도교수님은 상담(면담)에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 주었다. | 1~5 |
| | | ⑧ 지도교수님은 나를 존중해주시며 친절하게 상담하여 주었다. | 1~5 |
| | | ⑨ 상담(면담)에서 지도교수님에게 편안하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 1~5 |
| | 총평 | ⑩ 나는 전반적으로 지도교수님과의 상담(면담)에 만족한다. | 1~5 |